

|       |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|
| 의안번호  | 2211822      |
| 의 퇴 인 | 김태선의원        |
| 회 답 일 | 2025. 9. 29. |
| 추계번호  | 25C4079      |

#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## I. 재정수반요인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                       | 주요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  | 안 제13조의2(상담 업무 종사자에 대한 정신건강 지원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3조제1항제1호의 자살 관련 상담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정기적인 정신건강검진, 심리치유 등 정신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함(제1항)</li> <li>○ 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(제2항)</li> </ul> |

## 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### 1. 근거 규정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                       | 미첨부 근거 규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  | 안 제13조의2(상담 업무 종사자에 대한 정신건강 지원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</li> </ul> |

### 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에 따라 현행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자살 관련 상담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기적인 정신건강검진, 심리치유 등 정신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는 경우, 건강검진료 지원 등 상담 업무 종사자의 정신건강을 위한 사업 실시와 관련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<sup>1)</sup> 현시점에서는 그 규모를 추계

1) 법 제13조(자살예방센터의 설치)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)은 자살예방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1. 자살 관련 상담 (이하 생략)

## 하기 곤란

- 개정안은 정신건강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현시점에서 정신건강프로그램 운영 방식 등 추계에 필요한 사항을 알 수 없음

- 다만, 현행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<sup>2)</sup>에 따르면, 자살위험자 등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자살예방 상담·교육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정안에 따른 직접적인 추가재정소요는 크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됨

- 따라서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 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## Ⅲ. 부대의견

- 없음

2) 법 제17조(자살예방 상담·교육)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살위험자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·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.

1. 「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른 119구조대의 구조대원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
2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
3.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
4.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
5. 그 밖에 자살예방 상담·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

### 시행령 제10조(자살예방 상담·교육 실시기관) ① ~ ③ (생략)

④ 법 제17조제4항제5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.

1. 「노인복지법」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에게 대한 돌봄사업 종사자
2.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41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 및 같은 법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통합사례관리사
3.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종사자
4. 「치매관리법」 제17조제1항에 따른 치매안심센터의 종사자

## IV. 작성자

### □ 성명

|         |     |     |
|---------|-----|-----|
| 국회예산정책처 | 분석관 | 과장  |
| 사회비용추계과 | 이제정 | 이진우 |

### □ 대표연락처

|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
|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성명  | 전화번호         | 이메일 주소            |
| 이제정 | 02-6788-3739 | jejeong2@na.go.kr |